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499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7.[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redacted] 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58,8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2,355,200원, 지방교육세 235,52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합계 2,708,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제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3

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같은 항 제7호)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원시취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 점(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3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3

별지1

경정거부처분 목록

과세대상 부동산 표시	납부일자	과세표준	세목	금액
[redacted]	2013. 10. 1.	58,880,000원	취득세	2,355,200원
			지방교육세	235,520원
			농어촌특별세	117,760원
			합계	2,708,480원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23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